

Court Guide

알아두면 유익한 법정에서 사용되는 재판용어

재판 일반	주신문 · 반대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측이 먼저 하는 신문이 주신문, 주신문 후에 상대방 측이 하는 신문이 반대신문
	유도신문	신문을 하는 사람이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답을 암시하여 하는 질문.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민사 재판	소장(訴狀) · 답변서 · 준비서면 · 항소장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소장,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항소장, 소장이나 항소장에 대한 답변을 적은 문서가 답변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적은 문서가 준비서면
	쟁점과 증거의 정리, 집중증거조사	분쟁의 핵심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것이 쟁점과 증거의 정리. 다툼이 있는 요건 사실에 관하여 집중하여 증거조사하는 것이 집중증거조사
	인부(認否)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루는 지 답변하는 것이 인부(認否).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
	갑(甲)호증/을(乙)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가 갑(甲)호증,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류가 을(乙)호증
	피고인 · 변호인 · 검사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자로 공소 제기된 자 변호인 :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 검 사 :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국가의 기관
형사 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피고인 신문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Court Guide



서울고등법원에서 운영하는 견학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나요?

견학프로그램

- 참가대상 :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인솔자가 있는 단체(원할한 법정방청을 위하여 최대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는 개인
- 단체견학
 -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약 1시간 40분 소요)
 - 기념촬영 → 영상물 시청 → 견학공간 관람 → 형사재판 방청 → 모의재판 체험 → 판사와의 대화 → 기념품 증정
- 개인견학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약 30분 소요)
 - 기념촬영 → 견학공간 관람 → 형사재판 방청 → 기념품 증정
- 견학프로그램 관련 문의
 - ☎ (02)530-1191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홍보마당' 코너

서울고등법원 인턴십 프로그램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생이 방학 중에 법원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사법실무교육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알림마당' 코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출입구별 출입가능한 법정호실

법정출입구	법정호실
①	351, 352, 355-360, 452-460, 463, 464, 554, 556-562, 565, 566 법정
②	361-367 법정, 466 민사대법정, 569 법정
③	370, 374, 375, 378-380, 472, 476, 477, 572, 576, 577, 580, 581 법정
④	317-321, 418, 421-425, 519, 522-526 법정
⑤	311, 312 형사중법정, 417 형사대법정
⑥	302-310, 403-409, 412, 413, 501, 502, 505-510, 513, 514 법정

※ 행정항소심사건 - 신관 303, 306, 311 법정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서울고등법원과 관련한 그 밖의 상세한 안내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안내
Court Guide

Seoul High Court of Korea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서울고등법원

Court Guide

Q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포함) 및 지원의 합의 부가 제1심 법원으로서 판결한 사건을 제2심으로서 판단하는 법원입니다. 사건의 양이나 중요도 면에서 전국 법원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밎아야 할 절차가 있나요?

재판은 공개된 법정(法廷)에서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미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청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배포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방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입구에는 '오늘의 재판안내'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재판일정을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나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관한 재판진행정보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코너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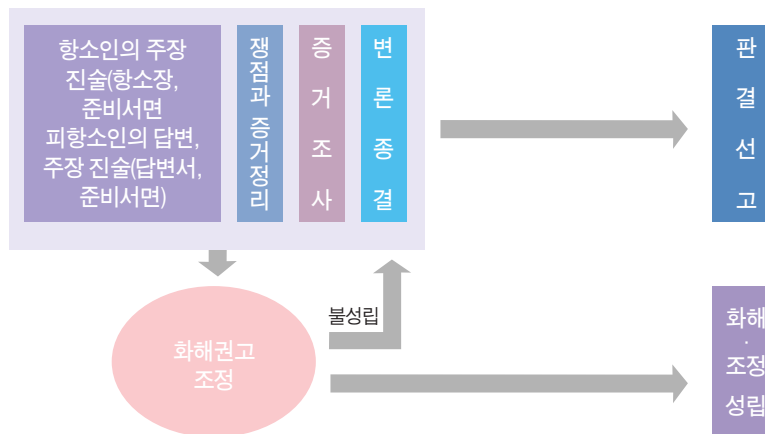
법정의 모습



위 그림은 형사항소심 법정의 예입니다. 민사법정에는 원고와 피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전자소송사건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전자소송 진행에 필요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절차의 흐름

민사재판 절차



Q

법정은 어떻게 찾아가나요?

법정출입구 ①번부터 ⑥번까지 6곳의 법정전용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청사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시판의 안내대로 법정출입구 번호만 따라가면 됩니다.

Q

재판을 방청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고, 휴대전화는 전원을 차단하여 벨소리나 진동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사진촬영이나 녹음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서울고등법원의 중요판결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법률정보마당' 코너에서 중요판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문제공신청'을 하면,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제공신청에 따라 제공하는 판결문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제공됩니다.

형사재판 절차

